

# 2022년 4월 14일 시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

2022. 04. 14.



NO	개정(안) 항목	적용대상 사업·사업장	개정(안) 주요내용	비고 (위반 시 벌칙 등)						
1	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	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<b>30명 이하</b> 사업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정의)</b> 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」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·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·운영하여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임.</li> <li>• <b>(설정방법)</b>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」를 설정할 수 있음.</li> <li>• <b>(납입방법)</b> 사용자는 사용자부담계정에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고, 가입자(근로자)는 가입자 부담금계정에 연 1,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 납입 가능함.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25 695 1821 983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725 695 882 735">구분</th> <th data-bbox="882 695 1821 735">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」 장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725 735 882 871">사용자</td> <td data-bbox="882 735 1821 871">· 최저임금 120%미만(22년 기준 230만 원)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%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저 수준의 수수료(0.2%)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.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725 871 882 983">근로자</td> <td data-bbox="882 871 1821 983">·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하여 근로자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운용해 주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체불 위험이 없어짐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」 장점	사용자	· 최저임금 120%미만(22년 기준 230만 원)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%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저 수준의 수수료(0.2%)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.	근로자	·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하여 근로자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운용해 주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체불 위험이 없어짐.	-
구분	「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」 장점									
사용자	· 최저임금 120%미만(22년 기준 230만 원)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 10%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최저 수준의 수수료(0.2%)를 통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.									
근로자	· 전문가들이 안정성과 수익률을 함께 고려하여 근로자 몫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운용해 주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체불 위험이 없어짐.									
2	확정급여형(DB형) 퇴직연금운영체계 개편	<b>(DB형 도입 사업장 중)</b> 상시근로자 수 <b>300명 이상</b> 사업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개요)</b>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상 기업은 적립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 1회 개최 및 적립금운영계획서 작성 의무화함.</li> <li>- <b>(심의·의결 사항)</b> 목표수익률의 설정·자산배분정책 등 적립금 운용에 대한 사항, 적립금 운용계획서, 재정안정화계획서 등</li> <li>- <b>(위원 구성)</b> 위원장은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위원 수는 5명 ~ 7명 이내로 구성 하여야 함 (최소적립비율 미 충족 시 근로자대표, 퇴직연금 관련 부서의 부서장, 퇴직연금 전문가 각 1명 씩 포함되어야 함)</li> </ul>	<b>적립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립금운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</b> - 위반횟수에 따라 <b>100 ~ 500만원 과태료 부과</b>						

NO	개정(안) 항목	적용대상 사업·사업장	개정(안) 주요내용	비고 (위반 시 벌칙 등)
3	확정급여형(DB형)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	<u>확정급여형</u> <u>(DB형) 가입</u> <u>사업장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 미만인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·통보해야 하며,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 1/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함.</li> <li>-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재정검증 결과에 기초하여 최소적립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 ('22.04.14. 이후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적용)</li> <li>- 2022년도 적립 부족 해소 여부를 2023년에 점검하여 행정지도 중심으로 이행을 유도할 계획</li> </ul>	위반 횟수에 따라 <b>200~1,000만원</b> <b>과태료 부과</b>
4	퇴직금 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) 이전 의무화	퇴직연금 제도가 아닌 <u>퇴직금 제도</u> <u>운영 사업장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퇴직금도 급여통장 등이 아닌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(IRP)계좌로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함.</li> <li>- (예외) 퇴직금 중간정산, 55세 이후 퇴직,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,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,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됨.</li> </ul>	IRP 계좌 개설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관련 별첨 행정해석(퇴직연 금복지과-1201, 2017.03.14.) 참조
5	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편	<u>퇴직연금</u> <u>제도</u> <u>운영 사업장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으로 확대함.</li> <li>-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전문기관은 1명 이상의 전문 강사를 두어야 하고 관련 교육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.</li> </ul>	-